

외국어 선택과목 어학검증시험 기준점수표(제23조의3제5항 단서 관련)

1.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있는 경우

시험의 종류		평가기준	기준점수
아랍어, 포르투갈어, 말레이-인도네시아어	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	문장구성능력(50점) 회화능력(50점)	60점 이상 (다만,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)

2. 「외무공무원임용령」 별표 2의2에 따른 경력요건이 없는 경우

시험의 종류		평가기준	기준점수
아랍어, 포르투갈어, 말레이-인도네시아어	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어학검증시험	문장구성능력(50점) 회화능력(50점)	70점 이상 (다만, 문장구성능력 및 회화능력에서 각각 2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)